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0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김용태·서지영·강선영

조정훈 • 백종헌 • 박정하

이성권 · 조은희 · 김소희

우재준 • 정성국 • 강대식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.

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될지라도,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이에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 중 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학교
- 나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」 제223조에 따라 설립·운영하는 학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     | 제2조(정의)               |  |  |
|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같다.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. ~ 1의3. (생 략)         | 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    |  |  |
| 2. "학교"란 <u>「초·중등교육</u> | 2 <u>다음 각 목의 어</u>    |  |  |
| 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       | <u>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    |  |  |
| 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           | <u>.</u>              |  |  |
| 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| 가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・고등학교・특수학교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 </u>              |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| <u>나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</u>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따라 설립·운영하는 학교</u>  |  |  |
| 3. ~ 5. (생 략)           | 3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|  |  |